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2022. 7.



한국경영자총협회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요 약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설문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6.28~7.4 (7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①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

-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는 응답자는 73.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5%
 - ※ '매우 부담된다' 26.5%, '다소 부담된다' 47.1%, '보통이다' 22.9%,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3.2%,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0.3%

②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수준 평가

- 文정부 기간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2022년 까지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82.1%가 '높다'고 평가
 - ※ '매우 높다' 39.5%, '다소 높다' 42.6%, '보통이다' 16.0%, '다소 낮다' 1.1%, '매우 낮다' 0.8%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7년 6.12%에서 2022년 6.99%로, 14.2% 증가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동 기간 14.3% 증가

③ 2023년 적용 건강보험료율 적정 인상률

- 내년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관련, 응답자의 71.2%가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한 반면, 文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상 재정 운영 목표(3.2%)에 해당하는 '3% 이상 인상'을 선호한 응답자는 1.1%에 불과
 - ※ '인하' 34.2%, '동결' 37.0%, '1% 미만 인상' 15.5%, '1~2% 미만 인상' 8.9%, '2~3% 미만 인상' 3.3%, '3% 이상 인상' 1.1%

4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8%) 개정

- 건강보험료율의 계속적 인상을 전제로 한 보험료율 법정 상한(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의 8%) 개정에 대해 '반대' 64.0%, '찬성' 24.7%
 - ※ '매우 부정적' 21.8%, '다소 부정적' 42.2%, '잘 모름' 11.3%, '다소 긍정적' 22.0%, '매우 긍정적' 2.7%
- 보험료율 법정 상한 개정은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 추진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과 현행 법정 상한 내에서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대립하는 문제로, 국민 다수는 후자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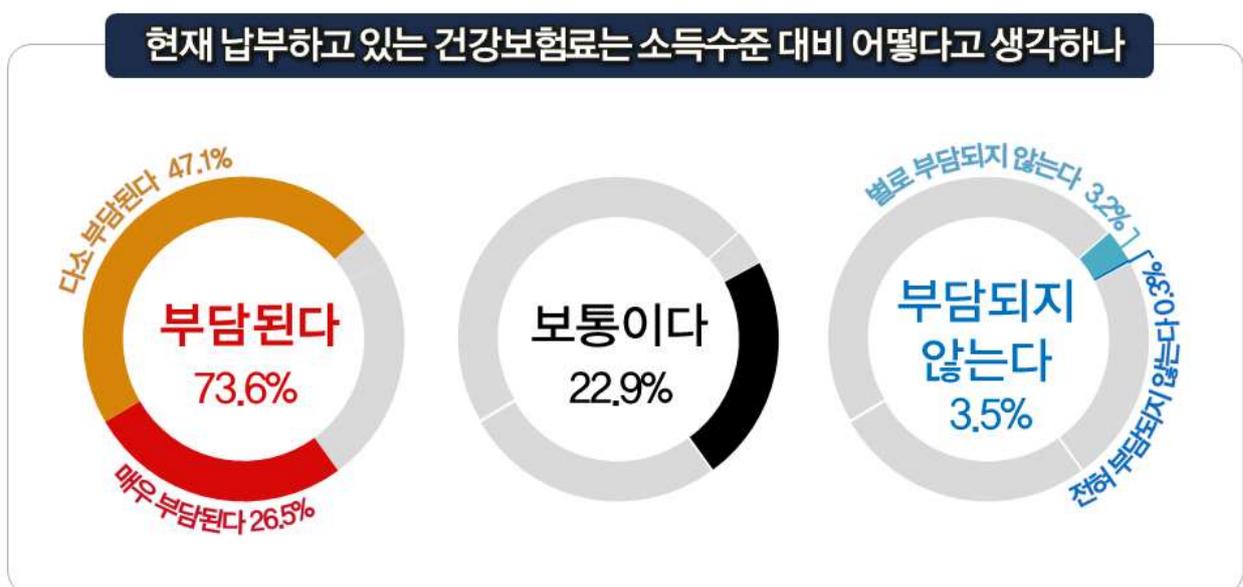
1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

▶ **부담된다 73.6%** > 보통이다 22.9% > **부담되지 않는다 3.5%**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설문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 지난 6.28~7.4(7일간)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6%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답변
 - 현재 소득 대비 본인 또는 부양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에 대해 '매우 부담된다' 26.5%, '다소 부담된다' 47.1%로, 전체 응답자의 73.6%가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 그 외 '보통이다' 응답은 22.9%였으며,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3.2%와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0.3% 등 부담을 느끼지 않는 국민은 3.5%로 집계됨.

[그림 1]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



□ (가입유형별) 직장가입자의 경우 72.7%, 지역가입자의 경우 76.0%가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소득 대비 '부담된다'고 답변

-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담된다' 72.7%, '보통이다' 24.3%, '부담되지 않는다' 3.0%
 - ※ '매우 부담된다' 23.8%, '다소 부담된다' 48.9%, '보통이다' 24.3%,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2.6%,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0.4%
-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담된다' 76.0%, '보통이다' 18.8%, '부담되지 않는다' 5.1%
 - ※ '매우 부담된다' 32.9%, '다소 부담된다' 43.1%, '보통이다' 18.8%,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5.1%,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0.0%
- 한편,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의 경우에도 '부담된다' 70.3%, '보통이다' 24.3%, '부담되지 않는다' 5.5%로 조사됨.
 - ※ '매우 부담된다' 28.4%, '다소 부담된다' 41.9%, '보통이다' 24.3%,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4.1%,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4%

<표 1>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

(단위 : %)

구분		부담된다	부담 수준		보통이다	부담되지 않는다	별로 부담 안됨	전혀 부담 안됨
			매우 부담	다소 부담				
전체		73.6	26.5	47.1	22.9	3.5	3.2	0.3
가입 유형	직장가입자	72.7	23.8	48.9	24.3	3.0	2.6	0.4
	지역가입자	76.0	32.9	43.1	18.8	5.1	5.1	-
	피부양자	70.3	28.4	41.9	24.3	5.5	4.1	1.4

2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를 인상률 평가

▶ **높다 82.1%** > 보통이다 16.0% > **낮다 1.9%**

□ 文정부 기간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를 인상률*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82.1%가 '높다'고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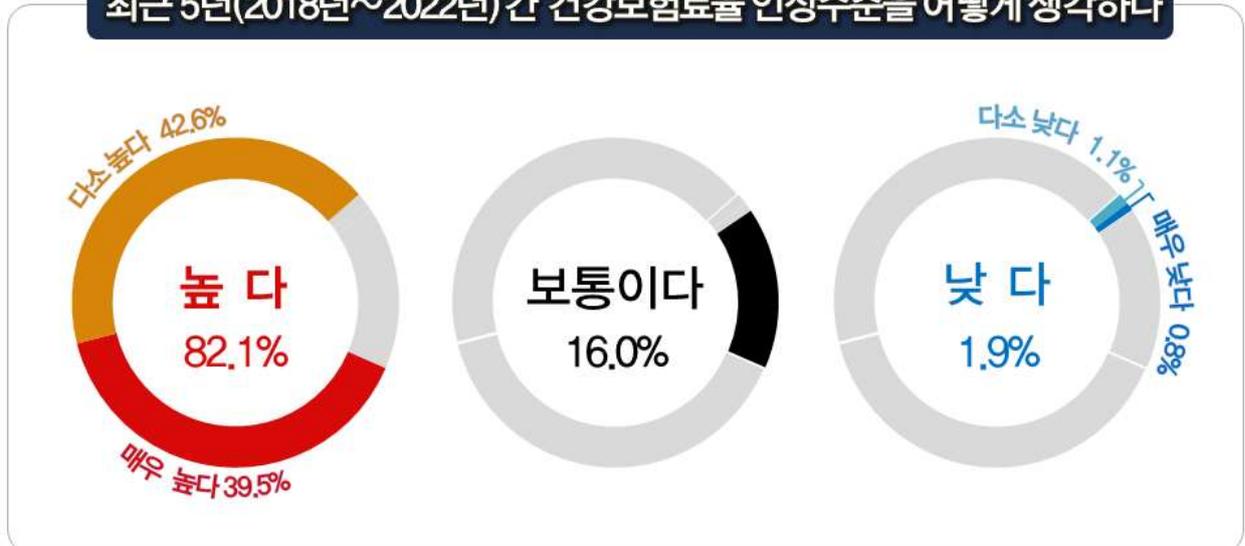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2017년 6.12% → 2022년 6.99%, 약 14.2% 인상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17년 179.6원 → 2022년 205.3원, 약 14.3% 인상

○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를 인상률 수준에 대해 '매우 높다' 39.5%, '다소 높다' 42.6%로, 전체 응답자의 82.1%가 '높다'고 인식

○ 그 외 '보통이다'는 응답은 16.0%였으며, '다소 낮다' 1.1%, '매우 낮다' 0.8% 등 '낮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를 인상수준 평가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건강보험료를 인상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나



□ (가입유형별) 직장가입자의 경우 81.1%, 지역가입자의 경우 84.3%가 최근 5년간 보험료를 인상될 수준에 대해 '높다'고 응답

- 직장가입자의 경우 '높다' 81.1%, '보통이다' 16.7%, '낮다' 2.2%
 - ※ '매우 높다' 39.2%, '다소 높다' 41.9%, '보통이다' 16.7%, '다소 낮다' 1.2%, '매우 낮다' 1.0%
- 지역가입자의 경우 '높다' 84.3%, '보통이다' 14.5%, '낮다' 1.2%
 - ※ '매우 높다' 39.6%, '다소 높다' 44.7%, '보통이다' 14.5%, '다소 낮다' 0.8%, '매우 낮다' 0.4%
- 한편,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의 경우 '높다' 86.5%, '보통이다' 13.5%, '낮다' 0.0%
 - ※ '매우 높다' 31.1%, '다소 높다' 55.4%, '보통이다' 13.5%, '다소 낮다' 0.0%, '매우 낮다' 0.0%
- 모든 유형에서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를 인상될 수준이 '높다'고 인식

<표 2> 최근 5년 (2018~2022) 간 건강보험료를 인상될 수준 평가

(단위 : %)

구분		높다			보통 이다	낮다		
		높다	매우 높다	다소 높다		낮다	다소 낮다	매우 낮다
전체		82.1	39.5	42.6	16.0	1.9	1.1	0.8
가입 유형	직장가입자	81.1	39.2	41.9	16.7	2.2	1.2	1.0
	지역가입자	84.3	39.6	44.7	14.5	1.2	0.8	0.4
	피부양자	86.5	31.1	55.4	13.5	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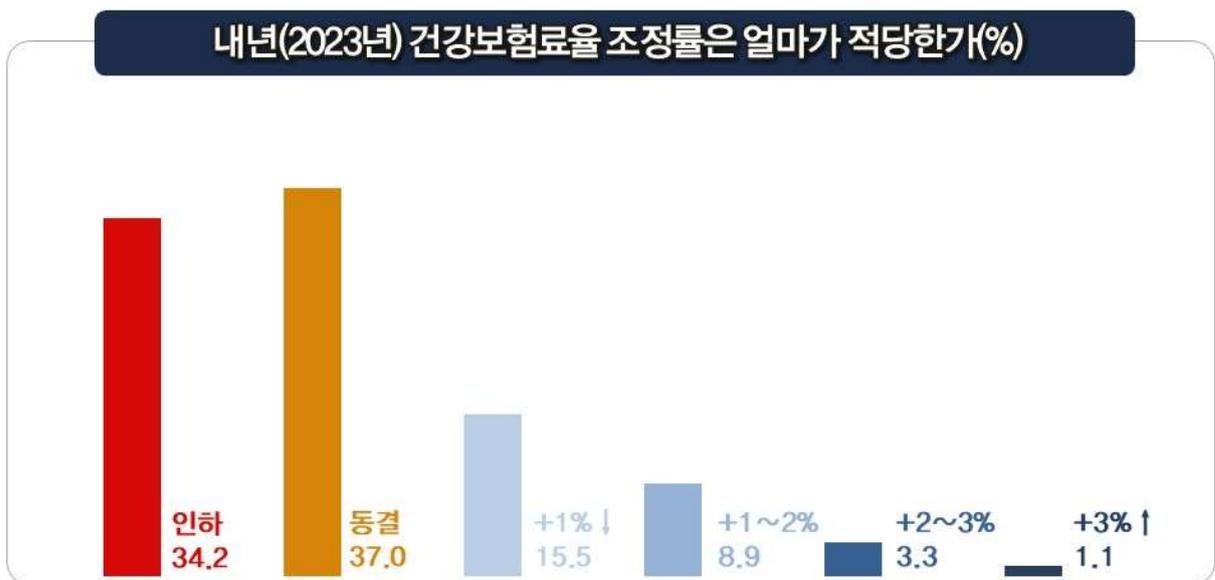
3

2023년 적용 건강보험료율 조정

▶ 가입자의 71.2%, '인하 또는 동결' 요구

- 2023년 적용 건강보험료율의 적정 조정률(구간)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2%가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
- 2023년 적용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7.0%가 '동결'을, 34.2%가 '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됨.
 -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인상률에 대해서는 '1% 미만 인상' 15.5%, '1~2% 미만 인상' 8.9%, '2~3% 미만 인상' 3.3% 순이었으며,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상 재정 운영 목표(3.2%)에 해당하는 '3% 이상 인상'은 가장 적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됨.

[그림 3] 2023년 건강보험료율 적정 조정률(구간)



□ (가입유형별) 2023년 적용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대해 직장가입자의 71.0%, 지역가입자의 71.4%가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한 반면, 정부 계획에 해당하는 '3% 이상 인상'을 응답한 비율은 각각 1.1%, 0.8%에 불과

-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3년 건강보험료율 적정 인상률에 대해 '동결' 39.2%, '인하' 31.8% 순이었으며, 인상하는 경우 '1% 미만 인상' 15.2%, '1~2% 미만 인상' 8.6%, '2~3% 미만 인상' 4.1%, '3% 이상 인상' 1.1%로 나타남.
- 지역가입자의 경우 '인하' 40.0%, '동결' 31.4% 순이었으며, 인상하는 경우 '1% 미만 인상' 16.9%, '1~2%미만 인상' 9.8%, '2~3%미만 인상' 1.2%, '3% 이상 인상' 0.8%로 나타남.
- 피부양자는 '인하' 31.1%, '동결' 28.4% 순이었으며, 인상하는 경우 '1% 미만 인상' 24.3% '1~2% 미만 인상' 12.2%, '2~3% 미만 인상' 4.1%, '3% 이상 인상' 0.0%로 나타남.

<표 3> 2023년 건강보험료율 적정 조정률(구간)

(단위 : %)

구분	인하 또는 동결	인하 또는 동결		+1% 미만	+1~2% 미만	+2~3% 미만	+3% 이상	
		인하	동결					
전체	71.2	34.2	37.0	15.5	8.9	3.3	1.1	
가입 유형	직장가입자	71.0	31.8	39.2	15.2	8.6	4.1	1.1
	지역가입자	71.4	40.0	31.4	16.9	9.8	1.2	0.8
	피부양자	59.5	31.1	28.4	24.3	12.2	4.1	0.0

4

건강보험료를 법정 상한(8%) 개정

▶ 반대 64.0% > 찬성 24.7% > 잘 모르겠다 11.3%

□ 건강보험료를 법정 상한(8%) 개정*에 대해 응답자 중 64.0%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됨.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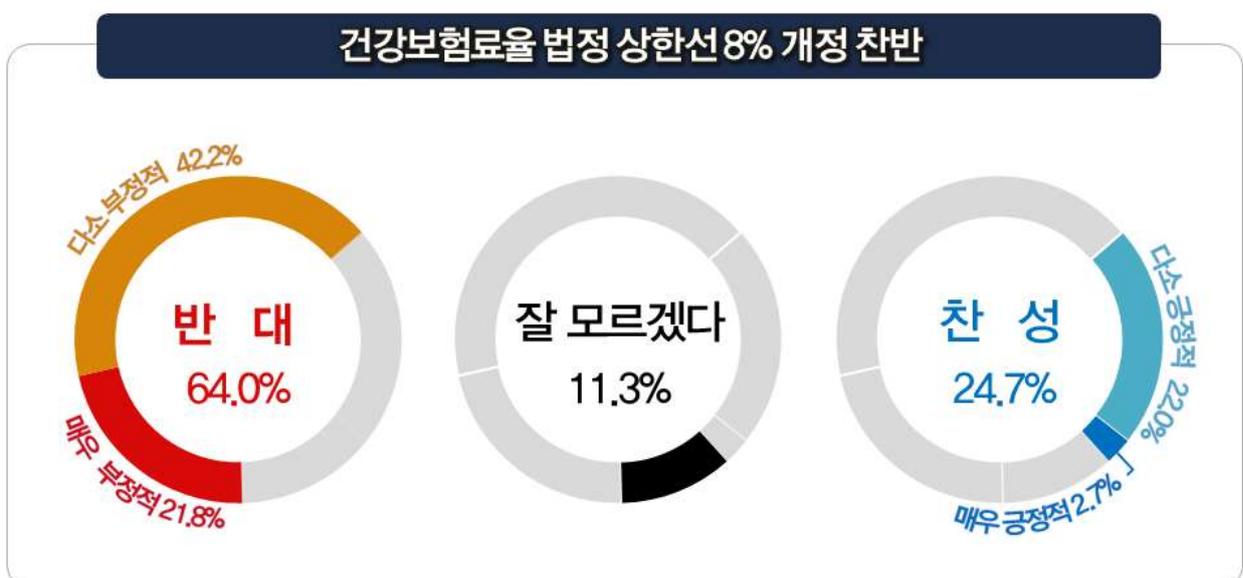
* 2022년 현재 6.99%인 보험료를 법정 계획에 따라 매년 3.2%씩 인상할 경우 2027년 보험료율은 8.18%로 법정 상한(8%) 상회

○ 건강보험료를 법정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 21.8%, '다소 부정적' 42.2%로, 전체 응답자의 64.0%가 '반대' 응답

○ 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은 24.7%, '잘 모르겠다' 응답은 11.3%

※ '매우 부정적' 21.8%, '다소 부정적' 42.2%, '다소 긍정적' 22.0%, '매우 긍정적' 2.7%, '잘 모름' 11.3%

[그림 4] 건강보험료를 법정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에 대한 의견



□ (가입유형별) 보험료율 법정 상한(8%)을 높이는 법 개정에 대해 직장가입자 63.1%, 지역가입자 65.5%, 피부양자 59.4%가 '반대' 응답

○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 법정 상한 인상에 '반대' 63.1%, '찬성' 25.5%, '잘 모르겠다' 11.3%

※ '매우 부정적' 21.4%, '다소 부정적' 41.7%, '다소 긍정적' 22.5%, '매우 긍정적' 3.0%, '잘 모르겠다' 11.3%

○ 지역가입자의 경우 '반대' 65.5%, '찬성' 23.2%, '잘 모르겠다' 11.4%

※ '매우 부정적' 22.0%, '다소 부정적' 43.5%, '다소 긍정적' 21.2%, '매우 긍정적' 2.0%, '잘 모르겠다' 11.4%

○ 피부양자의 경우 '반대' 59.4%, '찬성' 28.4%, '잘 모르겠다' 12.2%

※ '매우 부정적' 16.2%, '다소 부정적' 43.2%, '다소 긍정적' 24.3%, '매우 긍정적' 4.1%, '잘 모르겠다' 12.2%

<표 4>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분		반대			찬성			잘 모름
			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다소 긍정적	매우 긍정적	
전체		64.0	21.8	42.2	24.7	22.0	2.7	11.3
가입 유형	직장가입자	63.1	21.4	41.7	25.5	22.5	3.0	11.3
	지역가입자	65.5	22.0	43.5	23.2	21.2	2.0	11.4
	피부양자	59.4	16.2	43.2	28.4	24.3	4.1	12.2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 등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향후 건강보험료를 조정 및 건강보험 정책과제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2. 조사대상 및 방식

- 조사대상 :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 표 본 수 : 1,000개
- 가 중 치 : 성별·지역·연령비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조사방식 : 온라인패널설문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pm 3.1%p
- 조사기간 : 2022. 6. 28. ~ 7. 4. (7일간)
- 수행기관 : (주)모노커뮤니케이션즈 / 모노리서치

4. 주요 조사항목

-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
-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수준 평가
- 2023년 적용 건강보험료율 적정 인상률
-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8%) 개정

5. 응답자 개요

구분		응답자	
전체		1,000명	(100.0%)
성별	남	496명	(49.6%)
	여	504명	(50.4%)
가입유형별	직장가입자	732명	(73.2%)
	지역가입자	255명	(25.5%)
	임의계속가입자*	13명	(1.3%)
남부유형별	직접납부자	926	(92.6%)
	피부양자·세대원	74	(7.4%)

* 사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도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기간(3년)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는 자